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3일

농소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권 *태	설 *영 1980-07-29	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(중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11-23

